

2011 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12. 6. 26.

- 기후환경본부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공원녹지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 물관리정책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차 례

1. 심 사 경 과 .....	1
2. 소관부서별 회부 .....	2
3. 결산개요 .....	4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5
5. 질의 및 답변 요지 .....	59
6. 토론요지 .....	59
7. 소위원회 .....	59
8. 심사결과 .....	59
9. 소수의견의 요지 .....	59
10. 참고자료 .....	59

2011 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3
----------	-----

2012년 6월 26일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다. 상정일자

-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38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 6. 26) 상정
- 공원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38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 6. 25) 상정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38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 6. 21) 상정
-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38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 6. 22) 상정

- 물관리정책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38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 6. 22) 상정

## 2. 소관부서별 회부

### 가. 기후환경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결산(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나. 공원녹지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마. 물관리정책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3. 결산개요

#### 기후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가. 일반회계

##### 1.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수납율 (%)	미수납액
일반회계	240,255	185,604	180,765	97.4	4,839
세외수입	184,980	136,755	131,916	96.5	4,839
경상적 세외수입	79,588	72,054	72,054	100.0	-
임시적 세외수입	105,392	64,701	59,862	92.5	4,839
지방교부세	50	50	50	100.0	-
보조금(국고)	55,225	48,799	48,799	100.0	-

##### 2. 세출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260,540	12,838	590	-	△90	-	<b>273,878</b>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b>273,878</b>	248,435	244,085	4,497	25,295

## 나. 특별회계

### 1. 세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수 납 율 (%)	미수납액
계	257,000	209,523	209,384	99.9	13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57,000	209,523	209,384	99.9	139
경상적 세외수입	238,182	203,045	202,946	100.0	99
임시적 세외수입	18,818	6,478	6,438	99.4	40
도시개발특별회계	-	-	-	-	-

### 2.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 비 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계	261,311	9,171	-	-	-	270,482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57,000	-	-	-	-	257,00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4,311	9,171	-	-	-	13,482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270,482	221,033	213,140	19,179	6,101	32,062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57,000	207,599	205,133	19,179	2,466	30,22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3,482	13,434	8,007	-	3,635	1,840

## 다. 기금결산

### 1. 기후변화기금

#### 수입지출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1년도말 현재액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36,096	5,737	15,951	10,214	41,833

※ 수납액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이자수입 등

2011년도말 현재액 = 시금고 예치금(41,833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0원)

####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1년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55,996	5,738	15,951	10,214	61,734

2011년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41,833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19,900백만원)



## 2.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수입지출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증감액			2011년도말 현재액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6,767	1,765	24,547	22,782	8,532

※ 수납액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이자수입 등

2011년도말 현재액 = 시금고 예치금(8,532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0원)

###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증감액			2011년도말 현재액
	계(B)=(C-D)	조성액(C)	사 용 액(D)	
14,627	6,765	24,548	17,782	21,392

2011년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8,532백만원) + 시재정투융자기금 예약금(12,860백만원)

시재정투융자기금 예약금 = 2,000백만원('08년도) + 3,860백만원('09년도) + 2,000백만원('10년도)  
+ 5,000백만원('11년도)

**공 원 녹 지 국 소 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E)	징수율(%) (E/B)	미수납액
합 계	47,828,345	54,001,080	46,899,942	86.9	7,101,138
세외수입	37,597,897	43,830,632	36,729,494	83.8	7,101,138
경상적세외수입	32,971,208	29,862,310	29,800,271	99.8	62,039
임시적세외수입	4,626,689	13,968,322	6,929,223	49.6	7,039,099
국고보조금	10,230,448	10,170,448	10,170,448	100	0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계	362,698,227	91,408,951	4,961,957	459,069,135
일 반 회 계	212,216,799	37,196,186	1,160,000	250,573,183
도 시 개 발 계 특 별 회 계	150,481,428	54,212,566	3,801,957	208,495,951

(단위: 천원)

구 분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	408,793,869	384,768,193	4,969,000	24,416,452	44,915,490
일 반 회 계	228,522,678	217,331,744	1,349,000	11,562,860	20,329,580
특 별 회 계	180,271,191	167,436,448	3,620,000	12,853,592	24,585,910

## 다. 예비비 지출

### 1. 예비비 지출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미필이월액)	집행잔액
계	4,961,957	4,875,766	4,305,766	570,000	86,191
일 반 회 계	1,160,000	1,075,548	505,548	570,000	84,452
특 별 회 계	3,801,957	3,800,218	3,800,218	0	1,739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세입액(B)	세출액(C)	이월액(B-C)		
	계	당초예산	이월예산			계	순세계잉여금	개량·사고이월
2011년	901,079	843,000	58,079	861,875	780,142	81,733	34,806	46,927
2010년	898,083	801,000	97,083	866,172	764,607	101,566	43,487	58,079
증감	2,996	42,000	△39,004	△4,297	15,535	△19,833	△8,681	△11,152

**나.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미수금(B-C)	미수금처리		비율(%)	
			수입액(a)	과오납환불액(b)	실제수납액(c=a-b)		결손처분	익년이월액	조정(B/A)	징수(C/B)
2011년	901,079	885,924	862,770	895	861,875	24,049	712	23,337	98.3	97.3
2010년	898,083	889,729	867,036	864	866,172	23,557	536	23,021	99.1	97.4
증감	2,996	△3,805	△4,266	31	△4,297	492	176	316	△0.8	△0.1

○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자체수입							고정부채수입
		계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이월금	과년도미수금	자산매각	자본잉여금	
2011년	861,875	761,875	583,407	29,468	101,566	15,348	10,096	21,990	100,000
2010년	866,172	760,172	577,965	29,626	106,224	17,106	6,430	22,821	106,000
증감	△4,297	1,703	5,442	△158	△4,658	△1,758	3,666	△831	△6,000

○ 미수금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영업미수금		기 타 미 수 금					결 손 처 분
		현년도	과년도	자산매각	임대료	변 상 위약금	잡수입 등	과년도	
2011년	24,049	15,714	2,348	97	50	450	164	4,514	712
2010년	23,557	15,755	2,389	65	44	1,444	438	2,886	536
증 감	492	△41	△41	32	6	△994	△274	1,628	176

다.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 (B/A)
		계	지출액	이 월 액				
				소 계	개 량	사 고		
2011년	901,079	827,069	780,142	46,927	5,337	41,590	74,010	91.8
2010년	898,083	822,685	764,606	58,079	8,598	49,481	75,398	91.6
증 감	2,996	4,384	15,536	△11,152	△3,261	△7,891	△1,388	0.2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이용,전용,이체) + 예비비 사용액

라. 불용액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 산 절 감	예비비 잔 액	낙 찰 차 액	예산집행 잔 액
2011년	74,010	2,388	652	17,486	7,976	9,008	36,500
2010년	75,398	3,797	954	26,445	5,363	21,632	17,207
증 감	△1,388	△1,409	△302	△8,959	2,613	△12,624	19,293

## 마. 예비비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집 행 액	예비비 지출사유
12,543*	4,567	4,323	용수료소송 패소에 따른 미납금 납부 등 6건

\* 2011년도 예산안 예결위 예산심사 계수조정시 세입액(8,430억원)과 세출액(8,385억 24백만원)을 일치시키지 않아 차이(44억 76백만원)가 발생하여 예비비를 125억 43백만으로 조정한 것임(당초 80억 67백만원 + 추경 44억 76백만원(세입액-세출액 차이))

## 바. 예산전용

「용수료 소송 패소에 따른 납부액 부족예산」 등 17건, 116억 90백만원

**한강사업본부 소관  
( 일반 회 계 )**

**가. 세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17,096	16,414	13,662	2,751

**나. 세 출**

(단위: 백만원)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비비지출					
77,975	52,797	23,171	153,942	148,257	143,750	4,508	5,684

**물관리정책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징 수 결정액 (D)	수납액 (E)	미수 납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 (E/D)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5,078	281	15,359	18,573	18,565	8	0	8	99.9
일반회계	318	0	318	4,379	4,371	8	0	8	99.8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14,760	281	15,041	14,194	14,194	0	0	0	100

**나.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불용액)(%) {F=C-(D+E)}	
									불용액	불용율
계	21,134	514	0	5	0	21,648	18,657	800	2,191	10.1
일반회계	6,374	233	0	0	0	6,607	5,800	492	315	4.7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14,760	281	0	5	0	15,041	12,857	308	1,876	12.5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 영 배)

### 기후환경본부 소관

#### 가. 일반회계 세입 관련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2,402억 5천5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856억 5백만원, 실제수납액은 1,807억원, 미수납액은 48억 3천9백만원으로 나타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8> 회계연도별 세입예산 대비 실제수납액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2011년도	240,255	240,255	185,604	180,765	4,839
2010년도	150,638	150,638	204,762	199,924	4,898
2009년도	171,353	171,353	166,149	161,423	4,729
2008년도	181,654	181,654	171,415	166,686	4,729

- 징수결정액의 2.6%에 해당하는 48억 3천9백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47억 8천9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 미납액 중에서 지난년도 수입은 47억 5천1백만원이 미납되었는데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나. 일반회계 세출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1년도 예산액 2,605억 4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28억 3천9백만원, 예비비 5억 9천만원, 이용(감액) 9천만원을 합하여 총 2,738억 7천8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2,484억 3천5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440억 8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44억 9천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의 이용은 1건, 전용 2건, 변경사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최근 4년간 실적과 비교할 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9>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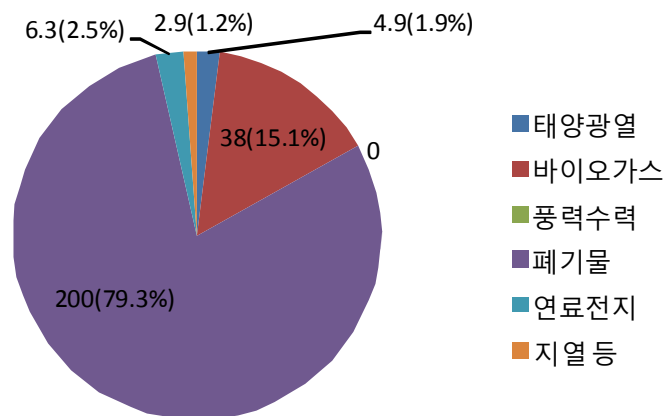
구 분	이 용	이 체	전 용	변경사용	사고이월
2011년도	90(1건)	-	859(2건)	-	4,497(9건)
2010년도	99(5건)	41,441(87건)	3,661(16건)	2,936(13건)	12,839(19건)
2009년도	19(3건)	4,366(8건)	3,614(16건)	984(10건)	15,019(26건)
2008년도	121(9건)	102(8건)	2,895(19건)	9,711(30건)	25,514(13건)

### 불용액

-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252억 9천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9.2%)으로 전년도 불용액 355억 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8.9%)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201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사업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57억 5백만원을 감액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음.

##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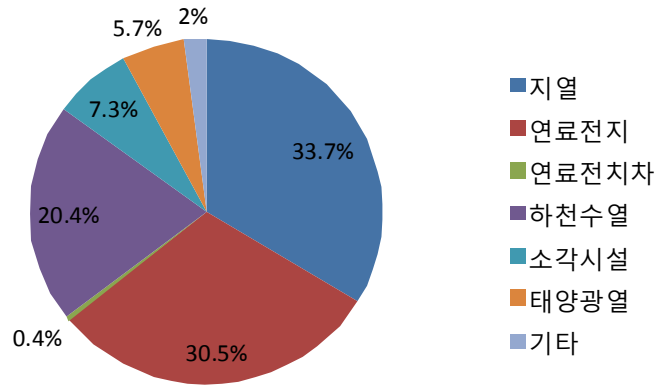
- 서울시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2030」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2000년 대비 20%저감,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40%로 줄이는 것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의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5%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폐기물 소각과 물재생센터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2.0%에 불과한 실정임<sup>1)</sup>.



<그림 5>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보급현황(단위: TOE, 2011년)

-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제로하우스 조성사업」 등 태양광 위주의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2030」에 따르면 태양광은 그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소연료전지, 소수력발전, 지열 등 다양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필요가 있음.

1)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p.10



<그림 6>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0년)

## □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은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열, 전기 등의 에너지 손실 및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건축물의 단열 보강, 조명 등 고효율 설비로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임.
- 서울시가 시청사, 산하사업소,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본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민간건축물의 참여 확대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역시 예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는 기후변화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그러나 기후변화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BRP) 융자 지원**」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지출계획 현액 108억원 중 42억 1천1백만원이 지출되어 불용비율이 61.0%에 달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표 10>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기금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B)	비용비율 (B/A)
	당초	수정(A)				
2011년도	10,800	10,800	4,211	-	6,589	61.0%
2010년도	30,000	30,000	6,687	-	23,313	77.7%
2009년도	10,000	30,000	14,592	-	15,408	51.4%
2008년도	5,000	5,000	3,291	-	1,709	34.2%

□ 음식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관련

- 「음식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은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의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음식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예산 3천5백만원에 의회심의 과정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그러나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당초 예산만 일부 집행하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시범 보급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소위 “불법증액” 예산으로 분류하여 전액 집행하지 않아 불용되었는 바, 이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친환경서비스 인증시스템 구축

- 「서울시 친환경서비스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은 서울시 자체의 친환경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환경표지제도 대상을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될 수 있어 사업추진을 취소한 것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한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다. 특별회계

### □ 도시개발특별회계

-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월드컵공원 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첨단 에너지 자립건물을 함께 보여주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수소스테이션」, 「태양광발전(315kW)」, 「풍력발전기 성능개선사업」은 완료되었고, 「에너지제로하우스 조성사업」은 금년 6월말에 준공될 예정임.
- 「에너지제로하우스 조성사업」은 계속되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금년도 사업 예산현액 128억원 중 73억 2천3백원을 지출하고 36억 3천4백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나 전시설계비 18억 6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회계로 별도 편성된 「에너지제로하우스 운영비」(3억원)는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음.
- 그 결과 전시설계비가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금년 6월말 준공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고 일반회계로 편성된 에너지 제로하우스 운영비 9억 2천만원도 많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표 11> 2011회계연도 에너지제로하우스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2,800	7,324	3,634	1,841
건 축	10,700	7,030	3,634	35
전 시	2,100	294	-	1,806

- 본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사를 담당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재배정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서울시가 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실제 사업은 SH공사(집단에너지공급사업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나 예수금 수입의 예산액은 실제 수납액에 비해 과다 편성되었으나, 잡수입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적게 편성되어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됨(결산서 p.20)

## 라. 기금

### □ 기후변화기금

-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을 살펴보면, 2차례에 걸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고유목적 사업으로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 등 6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고 집행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났음(검토보고서 p.15)

· 에코마일리지 시스템 고도화	1억 5천만원
·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억 8천8백만원
· 전경버스 전기공급시설 설치	7천7백만원
· 가정음식점 발생 폐유 수거차량 구매	2억 2천만원
· 분진흡입 청소차 도입	18억 9천2백만원
· 소규모 물청소 장비확보지원	10억 6천만원

- 그러나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진흡입 청소차 도입, 소규모 물청소 장비 확보지원, 가정음식점 발생 폐유 수거차량 구매사업 등은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기후변화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기금사업 중에서 「**융자금 지원사업**」의 경우는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가스사업 융자지원**」 사업은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해 사업수요가 줄어든 점을 감안할 수 있으나,
- 민간건축물에 대한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BRP) 융자지원**」은 지출계획 현액 108 억원 중 42억 1천1백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율이 61.0%로 나타났는데,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스코(ESCO; Energy Service Companies)사업과 비교하여 이자율(서울시 연리 2.50%, 에너지관리공단 연리 2.75%), 사업비의 80% 지원, 최대지원금액 10억원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시행시기가 늦어져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금년도에는 집행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사업비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10억원 중 지출액이 4억 5천만원에 불과 하여 불용율이 55.0%에 이르고 있으나, 본 사업은 집행실적 뿐만 아니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전기택시 시범보급**」사업은 2011년 10월 출시예정이었던 중형전기차의 출시가 늦어 지고 배터리 교환소의 개발 및 설치, 충전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음<sup>2)</sup>.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결산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음.

2)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당시에도 전기차 생산이 초기단계이고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미진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음



## 마. 종합의견

-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집단 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잡수익 등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함.
- 일반회계의 세출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발전 사업이외에도 서울시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보급할 필요가 있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은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건축물에 대한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용자금 지원」 사업은 현재의 지원조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편성한 사업비를 소위 “불법증액” 예산으로 분류하여 전액 집행하지 않아 불용되었는 바, 이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기후변화기금의 경우는 일부 고유목적 사업이나 용자금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으로 추진한 사업 중 일부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이라 할 수 있어 기금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 예산액은 478억 2천8백만원,
  - 징수결정액은 540억1백만원,
  - 실제수납액은 469억원으로 징수율은 86.9%임.
  
- 징수결정액의 13.1%에 해당하는 71억1백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전체 미수납액의 99.1%에 해당하는 70억 3천9백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임.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미수납액의 84.5%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결산에서는 지난년도 수입의 미납액 59억 5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지만, 나머지 50억 7천만원을 다시 다음년도로 이월시킴으로써 미수납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납액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적시 회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  
미수납액 중 대체로 다음연도 이월 후 거의 수납이 되는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까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과 함께 시·도비 반환금을 기간 내 수납하지 못할 경우 시비보조금의 차등지원 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122억 7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1억 9천6백만원과 예비비 11억 6천만원의 증액으로 예산현액은 2,505억 7천3백만원임.

이중 2,173억 3천2백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집행율은 86.7%이며, 5.2%에 해당하는 129억 1천2백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8.1%에 이르는 203억 2천9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 지난해도와 비교해 볼 때, 예산집행율은 77.2%에서 86.7%로 개선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율은 9.4%(371억 9천6백만원)에서 5.2%(129억 1천2백만원)로 떨어졌으며, 불용율도 지난해도 13.4%(534억 9백만원)에 비해 8.1%(203억 2천9백만원)로 대폭 낮아져 공원 녹지국의 경우 매년 사업취소 및 변경 등에 의한 불용액 과다문제가 결산검사 및 의회결산심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국 자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강화되었다 할 수 있음.

▷ 사업취소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 사업 (결산서 p.93)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남산내 잠식 체육시설로 분류된 석호정, 장충테니스장, 리틀야구장을 권역별로 이전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중 리틀야구장은 이전부지가 고덕보금자리 주택지구 내로 편입되어 보상이 중단되었고, 석호정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출범한 민선5기 시정방향에 부합되지 않아 이전이 중지되어 그 이전 예정 부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합계 121억 9천6백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	계	24,348	12,084	68	12,196
	테니스장	8,907	8,821	0	86
	국궁장	6,186	3,028	68	3,090
	리틀야구장	9,255	235	0	9,020

※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위의 표는 2012년 5월 현재로 작성된 것임.

-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결정 당시부터 추진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중구청과 주민, 의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의무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sup>3)</sup>은 아니지만, 체육공원이 있는 근린공원이 이용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임.
-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해 일부 예산은 효용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낭비되었지만, 2010년부터 2012년 5월 현재까지의 지출액 중 용역비(리틀야구장 1억 7백만원, 국궁장 이전지 1억원) 등은 활용가능할 것이므로 차후 반복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예산에 대한 경직성과 조직 편의주의적 예산집행 사례 (결산서 p.51)

- 「열린학교조성사업」은 2001년~2010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825개교가 이 사업을 통하여 녹지공간의 확보하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에서는 학교개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학교담장 개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의 발생 등 학교 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 교육협력국 등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2011년도부터는 열린학교조성사업(학교공원화사업)을 통해 담장 철거로 인하여 학교안전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투시형 휀스를 보완·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공원녹지국은 2011년도 예산확정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상세조사를 한 결과, 담장 재설치가 필요한 초등학교는 당초 서울시가 예상하였던 35개교에서 8개교 늘어난 43개교가 우선 사업대상 학교로 파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20개교만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고 30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3)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함.

- 2011회계연도의 「열린학교조성사업」예산은 의회심의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에 관한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의 확대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사업비를 5억원에서 35억원으로 30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시장이 동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을 근거로 증액된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음.
-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보다는 조직편의주의적 논리에 의한 예산집행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소송 및 보상지연에 의한 불용예산 및 사고이월의 문제 (결산서 p.164~170)

-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시행되는 공원조성사업을 살펴보면, 「도곡근린공원(강남)조성」과 같이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진행으로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소송이 3심까지 진행됨에 따라 공사타절 상태로 준공되어 공사비가 불용된 사례를 비롯하여 「중랑나들이숲 조성사업」과 같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하였으나, 화해권고와 일부 승소 등으로 종결되어 불용된 사례 등 주로 보상과 관련된 소송 등에 의한 보상지연 → 사고이월 → 소송결과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
- 「초안산근린공원(도봉)조성」의 경우, 손실보상금 소송에서는 1심 승소, 2심 패소, 3심에서 기각되어 손실보상금액 38억원의 지급이 확정되면서 이를 예비비 지출로 충당하였음.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경비에 예비비 사용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 1심에서 승소한 소송이 2심에서 패소하고 3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실 국	세부내역	구 분	판결일자	판결결과	내 용
공원녹지국	초안산근린공원 손실보상금	1심판결	2009.10.23	승소	0
		2심판결	2010. 9. 2	패소	38억원 지급
		3심판결	2011. 2.10	기각	38억원 확정
도시교통본부	공영주차장위탁 관리손실보상금	1심판결	2008.11.25	승소	0
		2심판결	2009.10. 9	패소	14억원 지급
		3심판결	2011.11.24	기각	14억원 확정

-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2011년도 본예산의 편성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의 비율을 보면, 공원녹지국은 62.2%로 서울시 전체의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예산 10.8%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따라서 각종 사업의 설계, 보상, 공사 추진에 수반되는 사전절차 및 보상협의 공사 추진상의 장애발생 등 사고이월의 사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 단지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이 많다는 것만으로 재정운영을 잘못하였다고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임.

(단위: 억원)

구 분	전체예산액	시설비 및 부대비	비 율
서울시	197,459	21,304	10.8%
공원녹지국	3,698	2,523	68.2%

※전체예산액은 최종 간주처리 포함. 이월액은 제외한 예산임

- 최근의 경향을 보면,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결과에 불복하여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예산을 확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주관부서와 논의를 통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서울대공원 동물원 유지관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의 부재(결산서 p.108)

- 2010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는 동물사 유지관리비의 부족분<sup>4)</sup>을 충당하기 위해 무려

4) 2010회계연도의 동물사 유지관리비 부족은 공공요금의 부족분이었음.

6건의 전용으로 3억 1천5백만원을 확보였으며, 2011회계연도에서는 동물사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건 1억원을 전용한 것이 파악되었음.

- 동물사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공공요금의 부족, 사료의 부족 등은 동물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람환경개선이나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 확보 보다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한해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해는 좀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해는 다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올해는 돌고래쇼의 중지와 제돌이의 방사 등 동물의 복지 및 윤리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주목받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서울대공원에서 사육하는 동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증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 종합의견

- 2011회계년도 공원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서는 201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의 125억 7천 9백만원의 감추경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집행율이 상승하였으며, 전용 및 사업변경의 건수도 감소하였음. 그러나 다음 연도 이월율은 전년도 대비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서울시 전체 이월율 1.9%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불용율도 9.8%로 서울시 전체 불용율의 4.4% 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임.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예 산 액	3,626억 9천8백만원	6,269억 8천8백만원	7419억 4천8백만원
예 산 현 액	4,590억 6천9백만원	7,234억 5천6백만원	1조 76억 2천2백만원
예산집행액 (예산집행율)	3,847억 6천8백만원 (83.8%)	5,654억 5천6백만원 (78.2%)	8,973억 2천1백만원 (89.1%)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율)	293억 8천5백만원 (6.4%)	914억 9백만원 (12.6%)	815억 3천만원 (8.1%)
불용액 (불용율)	449억 1천 5백만원 (9.8%)	665억 9천 1백만원 (9.2%)	287억 7천1백만원 (2.9%)

- 공원녹지국은 매년 결산검사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금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의 미수납율(10.3%)과 비교해 보면 16.2%로 다소 높은 편임.

(단위: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 율
서 울 시	906,589,719	93,427,662	10.3%
공원녹지국	43,830,632	7,101,138	16.2%

- 따라서 공원녹지국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금의 회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변상금 및 위약금의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 방지제도의 도입, 시도비 반환수입의 미수납을 해결하기 위한 시비보조금 차등지원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세출에서는 서울시 전체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높은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예산주관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소송 및 사전절차상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끝으로, 서울대공원은 현재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이 담보 상태에 있어 현실적으로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의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서울대공원의 예산은 단기 계획에 의해 편성될 수 밖에 없을 것임.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서울대공원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나 결산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서울대공원의 마스터플랜과 비전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가. 세입예산

- 수입은 사업계획에 의한 지출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편성이 요구됨.
- 2011년도 **징수결정액**<sup>5)</sup>은 8,859억 24백만원으로 예산현액(9,010억 79백만원) 대비 98.3%로 전년도(99.1%)에 비해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정확성은 다소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통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차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자본적수입 중 고정부채수입이 당초 예산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500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 전년도 징수결정액(8,897억 29백만원) 대비 0.4%인 38억 6백만원 감소되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 **수익적수입**<sup>6)</sup>은 6,292억 5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0.6%인 39억 80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업외수익은 14억 19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영업수익이 54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자본적수입**<sup>7)</sup>은 1,321억 8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인 31억 32백만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산매각수입은 36억 98백만원 증가하였으나 고정부채수입이 60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이월재원**<sup>8)</sup>은 1,244억 4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46억 94백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343억 50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이 390억 4백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5) 징수결정액(세입결산액) = 수익적수입(상수도사업수익) + 자본적수입 + 이월재원

6) 수익적수입(상수도사업수익) = 영업수익 + 영업외수입

7) 자본적수입 = 고정자산매각수입 + 고정부채수입 + 자본잉여금수입

8) 이월재원 =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 이월재원충당액(이월액)

<표 1>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조정율(B/A)	비 고
합 계	901,079	885,924	98.3	
수익적수입 (상수도사업수익)	606,318	629,253	103.8	
자본적수입	171,978	132,183	76.9	
이월재원	122,783	124,448	10.4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7%에 상당하고 전년(235억 57백만원) 대비 4억 92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업미수금(180억 62백만원)은 감소하였으나 과년도 기타미수금(45억 14백만원)이 16억 28백만원 증가하였고 결손처분 또한 7억 1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6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과년도 기타미수금의 증가는 소송계류 중인 강남수도사업소 처분 과태료(5억 72백만원)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처분 손괴자부담금(5억 27백만원)이 미수납된 것이 주요 원인이고, 결손처분 증가는 2009.10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으로 상수도 요금 징수 소멸시효가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행 원년인 2010년에는 시효 결손이 미진상태에 있다가 2011년도에 대폭 결손처분되었기 때문으로,
-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한 납기내 징수를 제고방안 및 소멸시효 축소에 따른 고액·장기 체납 징수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고정부채수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역점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시재정투융자 기금에서 전년도 1,060억원을 차입한데 이어 2011년에도 1,000억원을 차입하여 2011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3,227억원으로 전년(2,483억원) 대비 744억원 증가하였고 6개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완료되는 2015년을 정점으로 6,779억원까지 증가된 이후 감소될 전망이지만,

- 채무잔액 증가에 따라 원금 상환액에 비하여 이자지급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차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표 2> 차입상환계획 및 채무잔액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차 입	1,000	1,250	1,409	1,471	-	-
원금상환	255	181	107	101	189	389
이자지급	124	168	222	282	309	298
채무잔액	3,227	4,296	5,598	6,968	6,779	6,390

- 당기순이익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특히 금번 결산에서는 전년(441억 90백만원) 대비 452억 16백만원 감소하여 최근의 당기순이익 기조에서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전환되어 당기순손실은 10억 2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 이는 정수비 및 감가상각비<sup>9)</sup>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6억 26백만원 감소하였고 유형자산 처분손실<sup>10)</sup> 등이 증가하여 영업외손익이 215억 46백만원 감소하였으며, 특별이익<sup>11)</sup>이 발생하지 않아 특별손익이 30억 44백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함.

<표 3>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당기순이익(손실)	61,229	57,143	47,500	44,190	-1,026

- 결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9조(결손의 처리)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중 이익적립금(1,010억 70백만원)에서 10억 26백만원을 결손금 처리할 계획에 있음. (결산서 P 196, 198)

9) 고도정수처리 완공 등 대규모 자산취득 증가로 '11년도 가동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전년대비 9,706백만원(12.9%) 증가함

10) 완공된 고도정수처리시설 이전의 구 정수처리시설 폐기손실(10,728백만원)로 유형자산 처분손실 증가

11) 전년도에는 회계간 유상이관 및 기타 도시계획(공원조성 등)에 따른 비경상적 토지 처분이익(3,04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연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음

<표 4> 결손금 발생·처리(안)

(단위: 백만원)

결손금발생(이익잉여금발생)				결손금처리(이익잉여금처분)				차기이월
계	전 기 이 월	전 기 오 류	당 기 순이익	계	이 익 적립금	감 채 적립금	건 설 적립금	미 처 분 이익잉여금
-1,026	0	0	-1,026	-1,026	-1,026	0	0	0

- 수도요금 **공급단가**는 톤당 516.21원으로 전년(514.16원) 대비 0.4%인 2.05원 증가하였으며, **공급원가**는 톤당 621.44원으로 전년(577.48원) 대비 7.6%인 43.96원 증가하였음.
- 총괄원가는 원수구입비 증가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투자비 마련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7.8%)한 반면 급수수익은 소폭 증가(0.4%)에 그쳐 2011년도 **요금인상요인**<sup>12)</sup>은 전년도 12.32%에 비해 **8.07% 증가한 20.39%**에 달하고 있는 등 요금인상요인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5> 최근 5년간 요금인상요인 변동 현황

년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요금인상요인(%)	7.11	8.37	14.27	12.32	<b>20.39</b>

- 다만, 금년도 수도요금이 평균 9.6% 인상됨에 따라 2012년 톤당 수도요금은 564원으로 전년 대비 48원 증가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상적인 원가구조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2012년 결산시 요금인상요인은 10.5%정도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12) 요금인상요인 = (총괄원가-급수수익)/급수수익

## 나. 세출예산

### 예비비 지출 (결산서 P 110)

-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은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5억 4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39%)으로 전년(82억 5백만원) 대비 43억 38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결위 예산심사 증액삭감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지 않고 세입보다 세출을 44억 76백만원 적게 편성함으로써 예비비에 추경예산 44억 76백만원을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킨 것에 기인하고 있음.
-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용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원수구입비 부족예산 30억원<sup>13)</sup> 등 총 **6건, 45억 67백만원**으로 전년(28억 42백만원) 대비 60.7%인 17억 2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이중 43억 23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 44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율은 5.34%**로써 전년도 1.06%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약품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에서 그 불용율이 29.7%로 높은 것에 기인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약품비에서 원수구입비 부족예산 34억 50백만원을 변경<sup>14)</sup> 사용하고 동결관 정비 및 예방 부족예산 14억 26백만원을 전용 사용함에 따라 약품비가 부족하게 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불용율이 높으며, 시재정투융자기금 지급이자도 당초 차입 예정액의 3개월분만 편성하여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점은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13) 2011년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의 65.7%를 차지하고 있음.

14)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표 6>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예비비 지출 사유
생산재료비 (원수구입비)	3,000	3,000	용수로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원수구입비 미납금 납부
인건비성 경비 (연금지급금)	3	3	'11년도 보수예산 증가에 따른 연금지급금 증가
인건비성 경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14	212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요율인상 (2.66 → 2.82%)
인건비성 경비 (연금부담금)	532	532	'11년도 보수예산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
시재정투융자기금 상환 (지급이자)	5	5	3개월분 지급이자 편성에 따른 부족액 발생
생산재료비 (약품비)	813	571	11월 이상기온에 따른 약품비 사용급 증에 따른 부족액 발생

- 또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납부액 부족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은 요율 인상률의 예측이 어려운 예산에 대한 지출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더욱 정확한 예산추계나 불가피한 경우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사용을 통하여 예비비의 지출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예산이월** (결산서 P 112~125)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등 76건, 469억 27백만원으로 전년 (580억 79백만원) 대비 19.2% 감소하는 등 최근 수년간 이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표 7> 최근 3년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2009년	2010년	2011년	비 고
이 월 액	97,083	58,079	46,927	예산현액 대비 5.2%

- 이중 건설개량이월액<sup>15)</sup>은 53억 37백만원(4건)으로 전년 대비 32억 61백만원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액<sup>16)</sup>은 415억 90백만원(72건)으로 전년 대비 19.2%인 78억 91백만원 감소하였음.
- 예산이월 사유 중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은 25건, 194억 43백만으로 전체 이월액의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유관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은 23건, 79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6건, 46억 58백만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유관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됨.

<표 8> 이월 사유

(단위: 백만원)

합 계	사전절차지연	유관사업지연	장애요인발생	사업계획변경	기 타
46,927	19,443(25건)	7,909(23건)	11,700(2건)	2,146(4건)	5,729(22건)
100(%)	41.4	16.8	24.9	4.7	12.2

- 이월사업 중 ‘병물아리수 NSF 품질인증 취득용역’은 예산 편성시 검토 및 자료조사 등의 사전 절차기간<sup>17)</sup>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 지연의 사유로 지출원인행위액 전부를 이월시켰고,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과 ‘활성탄재생시설 도입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다수의 사업이 용역타당성 심사나 발주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전절차 지연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는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 ‘구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재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4차)’ 및 수도자재관리센터 자재구매의 경우 예산을 이월하는 사유<sup>18)</sup>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로 향후에는 연초 감리업무나 자재

15)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본예산 중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것으로 재이월 가능

16) 원인행위를 했으나 지출을 못한 경우와 부대경비, 감리비 등을 원인행위를 못하고 이월하는 것

17) NSF인증 취득을 위한 사전검토 및 자료조사 등 3개월, 취득절차 기간 8개월 정도 소요됨

18) '11년과 '12년 사이의 업무공백 방지와 연초 공사 자재가 일시에 다량 소요됨에 따라 사용빈도가 높은 자재를 사전에 구매하여 확보

구매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적시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상수도관 관리 로봇개발 구매’ 사업의 경우 상수도관 관리 로봇은 개발이 완성되었으나 로봇의 관 내부 유영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자 기설치된 Test-Bed 일부 구간을 투명 아크릴관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사업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예산 이월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본 사업은 향후 상수도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큰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의 하나로써 사업 초기 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월은 예산현액 대비 5.2%로 전년도(6.5%)에 비해 1.3%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서울특별시 일반회계 0.5%, 타 특별회계 4.9%), 사고이월 제도가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상수도공사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절차 기간을 고려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물량, 사업비 등)하고 적시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결산서 P 126)

- 2010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수유배수지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총 74건, 580억 79백만원이었으며, 이중 534억 65백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이월액 집행율은 전년도 이월액 대비 92.1%로 전년도에 비하여 2.0% 증가하였음.(건설개량이월 82.2%, 사고이월 93.8%),



- 전년도 이월사업 중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및 책임감리용역’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29백만원 전액을 미집행 하였고 ‘강북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1차) 전기공사(10억 41백만원) 및 정보통신공사(73백만원)’는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토목구조물이 미시공 되어 이월예산 집행율은 각각 21.9%, 4.7%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예산조정(시의회 삭감)에 따른 외부 요인에 기인하며,
- ‘상수도 GIS웹 전환구축(5억 40백만원)’은 산출물 검사 중 미완수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준공검사가 지연됨으로써 5.4%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 □ 예산전용 (결산서 P 134)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 2011년도 예산전용액은 ‘생산재료비(원수구입비)’ 등 17건, 116억 90백만원을 전용하였고 전년(38억 97백만원) 대비 200%인 77억 93백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예산전용 사례는 ‘수자원공사와의 용수료소송 패소에 따른 용수료 미납금 납부 예산부족’ 53억 69백만원, ‘동결관 다량 발생으로 인한 동결관 정비·예방 예산부족’ 14억 26백만원, ‘수도관 동결해빙 및 누수증가에 따른 누수복구 예산부족’ 15억 52백만원, ‘신규 급수공사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스티로폼 교체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 예산부족’ 14억 38백만원 등을 전용하였는데, 이중 ‘용수료 미납금 납부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전용이 53억 69백만원으로 예산전용의 45.9% 차지하고 있음.
- 전용예산 중 ‘동결관 정비·예방 예산부족’으로 생산재료비 중 약품비에서 14억 26백만을 전용(‘11.6.23)하였으며, 3차<sup>19)</sup>에 걸쳐 ‘원수구입비 납부 부족예산’으로 34억 60백만원을 변경사용함에 따라 약품비가 부족하게 되어 다시 예비비를 5억 72백만원 지출(‘11.12.30)한 바 있는데, 맛·냄새 물질인 지오즈민 농도가 2011년 11월

19) 2011년 9월 6일 30억 80백만원, 9월 30일 3억 70백만원, 11월 29일 10백만원 변경승인

22일 이후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에도 약품비를 원수구입비로 변경 사용했다는 것은 약품비에 대한 예산전용과 변경사용에 있어 신중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당초 약품비 예산은 152억 97백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5억 72백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이 48억 86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실제 약품비는 당초 예산의 71.6% 수준으로, 비록 약품 사용량은 원수 수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전용 및 변경사용이 없었다면 약품비의 28.4%가 불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 최근 수년간 약품비의 불용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수질변동 사유로 약품비를 과다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수년간의 원수 수질 변동<sup>20)</sup> 추이와 약품비 집행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표 9> 약품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당 초	최 종*		
예산액	14,829	15,297	11,224	14,167	
집행률	60.4	71.6	97.5	?	

\*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지출 반영

**변경사용** (결산서 P 72~87)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간 실·국장(본부장<sup>21)</sup>)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1년도 변경사용액은 ‘누수복구비 부족예산’ 등 24건, 128억 51백만원으로 전년(28건, 143억 49백만원) 대비 14억 98백만원 감소하였음.

20) 2011년도는 영등포2공장 가동 및 11~12월 조류발생으로 인한 분말활성탄 사용량 증가로 약품비가 2010년에 비하여 오히려 22.3% 증가했던 해임.

21) 30백만원 이하 부분부장, 30백만원 이상 본부장 결재

- 예산의 변경사용에 대해 결산서상(결산서 P 72)에는 전용 증감액에 포함되어 별도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고 변경사용 조서 또한 미작성 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결산서식에서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에 추경 예산액, 예비비 지출액, 전용 증감액을 가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 향후에는 면밀한 결산검토를 위해 변경사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전용과 더불어 변경사용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변경사용 내역(검토보고서 P 30) 중 옥내배관 관리개선<sup>22)</sup> 및 음수대 설치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감소되어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증액한 바 있으나, 예산집행을 보류하다가 결국 연말에 증액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업에 변경 사용한 것으로 동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시기 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라 할 것임.

□ **불용** (결산서 P 168)

-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전년도 불용액 753억 98백만원에 비해 13억 88백만원(0.19%) 감소한 740억 10백만원이었고 예산현액(9,010억 79백만원) 대비 불용율 또한 8.2%로 전년도 8.4%에 비해 0.19% 감소하였으며,
- 불용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전년도의 경우에는 불용액의 35.1%가 예산절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당해 연도에는 예산집행잔액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하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의 순이었음.
-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회 증액 예산 중

22) 2010년도 예산 121억 95백만원  
2011년도 집행부 예산안 41억 95백만원, 의회 증액(수정) 예산 80억 17백만원

‘송배수관 정비사업’ 200억원과 ‘세척갱생관로 정비’ 100억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고려한다면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지만, 수돗물에 대한 가장 큰 불신 원인 중 하나인 노후 수도관 정비·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증액한 수도관 정비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표 10> 불용액 원인별 구성비

(단위: 백만원)

년 도	합 계	낙찰차액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sup>23)</sup>	사업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2011년	<b>74,010</b> (100%)	9,008 (12.2%)	17,486 (23.6%)	36,500 <b>(49.3%)</b>	7,976 (10.8%)	2,388 <b>(3.2%)</b>	652 (0.9%)
2010년	<b>75,398</b> 100%	21,632 (28.7%)	26,445 <b>(35.1%)</b>	17,207 (22.8%)	5,363 (7.1%)	3,797 <b>(5.0%)</b>	954 (1.3%)

- 주요 불용 사업 중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및 책임감리용역’은 북한산 콘도건설 추진 공정과 2011년도 사업요구예산 58억 60백만원을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 문제를 고려할 때,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전년도 이월 예산 15억 29백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임.
- ‘상수도 GIS웹 전환구축’은 국가 및 서울시 공간정보 DB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개발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이유로 용역수행 기간을 20개월(’10.3.30~’11.11.30)로 하여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작년 결산시 이에 대해 지적했던 사례로,
- 2010년도 예산을 이월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 후 용역비를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23) 불용액 원인 중 예비비 잔액은 전년(53억 63백만원) 대비 26억 13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해연도 세입, 세출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예비비 당초 예산에 44억원 76백만원을 추경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가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임.

산출물 검사 중 미완수 사항이 발생되어 2011회계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하여 전년도 이월예산 5억 40백만원 중 94.6%인 5억 11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후 지적 사항 조치 후 금년 2월 21일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관련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해당 업체에는 지체상금 3억 2백만원(지체일 71일)을 부과·징수하였음.

- 그리고 ‘강북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1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2011년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예산조정(삭감)으로 토목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이 불가하여 각각 78.1%, 95.3%를 불용 처리한 것임.
- 전반적으로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또한 8.2%로 타 특별회계(8.2%)와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미집행 증액예산을 고려한다면 예산 불용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회계(2.7%)에 비해서는 여전히 불용율이 높고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일부 있는 바,
- 앞으로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11> 불용액 5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율
1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1,443	1,443	100%
2	강북 침전지 유입유량 균등분배 자동화설비	208	208	100%
3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86	86	100%
4	영등포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70	70	100%
5	암사 1정수장 착수정 정류벽 설치	63	63	100%
6	뚝도 분말활성탄 사이로 홍보판 설치	50	50	100%
7	암사 1정수장 역세송풍기 제작설치	30	30	100%
8	상수도 GIS웹 전환구축	540	511	94.6%
9	강북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1차)전기공사	1,041	813	78.1%
10	와우산배수지 시설개량	120	63	52.5%
11	자양취수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29	15	51.7%
12	u-Arisu Net 광선로감시 시스템 구축	86	44	51.2%

\*불용액 조서의 시설부대비는 제외함.

## 다. 종합의견

- 2011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차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고정부채수입이 당초 예산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되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최근 감소 추세에서 금년에는 10억 26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총괄원가는 원수구입비 증가와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자본비용 추가발생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급수수익은 소폭 증가에 그쳐 요금 인상요인은 전년도에 비해 8.07% 증가한 20.39% 달하고 있는 등 상수도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음.
-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완료되는 2015년을 정점으로 차입에 따른 채무잔액은 6,779억원까지 증가되어 이자지급액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통한 예산 확보로 차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세출예산의 큰 특징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용수로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원수구입비가 예비비 지출 30억원, 전용 및 변경사용 111억 3백만원 등을 통하여 당초 예산 보다 141억 3백만원이 추가 지출되었으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로 인상 시도에 따라 원수구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수도 재정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따라 결산서 상에는 전용액 증감에 포함되어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결산검토를 위해 예산 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강사업본부 소관

### 가. 세입총괄

- 2011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170억 9천6백만원에 징수결정액 164억 1천4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3.2%인 136억 6천 2백만원임.
- 징수결정액(164억 1천4백만원)의 16.8%에 해당하는 27억 5천1백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24억 7천3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징수율 (B/A)
2011년도	2,229	2,229	4,021	1,548	2,473	38.0
2010년도	1,753	1,753	3,596	1,118	2,477	31.0
2009년도	1,079	1,079	4,023	1,628	2,395	40.0
2008년도	396	396	4,802	2,553	2,249	53.2
2007년도	376	376	1,897	692	1,205	36.5
2006년도	284	284	1,042	459	583	44.0

-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으나 2010회계년도 결산 심사시 “미수납액과 이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비교하여 수납가능성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미수납액 24억 7천3백만원 중 15억 9천6백만원을 결손처분<sup>24)</sup>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24) 「지방세 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 지체상금 미부과로 인한 세입 누락(세빛등등섬 조성사업)

- 세빛등등섬은 2011년 9월 30일자로 준공되었지만, 연결도교의 재시공, 위탁운영 사업자의 미선정 등을 이유로 정상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세빛등등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주)플로섬이 체결한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제37조 및 제42조제5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운영을 60일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중단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中

제37조(이행지체) ①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준공·운영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 1.~4. (생략)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60일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중단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sup>25)</sup>에 따르면 협약서 제37조를 근거로 2011년 10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91억 9천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제42조제5호를 적용하여 201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세빛등등섬의 준공 이후 연결도교 재시공과 위탁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상금 부과시에는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25) 결산검사의견서 p.7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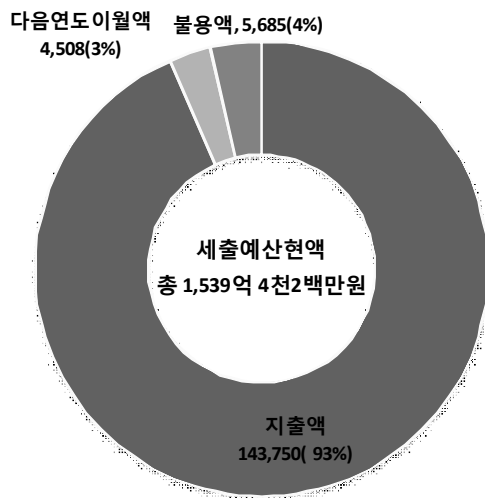




<그림 1> 세빛등등섬 조감도

## 나. 세출총괄

- 세출예산 현액은 2011년도 예산액 779억 7천5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527억 9천 7백만원, 예비비 231억 7천1백만원을 합하여 총 1,539억 4천2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2,527억 8천2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2,028억 9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527억 9천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억 8천5백만원(현액대비 불용율 3.7%)임.



<그림 5>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 예산전용

- 2011회계연도 전용은 총3건, 2억 3백만원으로 작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의 경우는 3년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에 따라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시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사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결산서 p.42)

## □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8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사업변경과 세목변경을 변경사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2011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6건, 6억 3천7백만원으로 민간위탁금, 공공요금, 감리비, 보수 부족분 등을 채우기 위해 변경사용한 것임.
- 「육갑문 수해예방」사업은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로, 감리비는 2011년 본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만을 확보한 후 그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사용한 것은 예산의 변칙적인 집행<sup>26)</sup>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것임.

## □ 감추경예산 사업집행(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시에서는 제235회 정례회에서 사업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26)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제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비중 시설비만을 반영하고 감리비는 낙찰차액이 생기면 변경하여 감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표 2> 2011년 감추경예산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가경정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	집행잔액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244	208	208	177	-	31
육갑문 수해예방	3,500	3,231	3,231	3,231	-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1,260	970	4,794	4,030	514	250
한강 수변공원화 효율적 추진방안연구	287	168	168	138	-	30
한강 수변공원화 환경영향조사	229	98	98	78	-	20
한강홍보선 및 투어선 운영	685	485	485	339	-	145
한강문화포럼 운영	10	5	5	1	-	4

- 그러나 예산을 삭감한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20%를 넘는 사업이 많아 당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는 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 부당한 예비비 사용(양화대교 구조개선 사업)

- 서해벚길 조성사업은 2011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752억원이 전액삭감된 바 있으나, 서울시는 서해벚길 조성사업의 부속사업인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공사중단시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과 불편 가중, 이미 투자한 사업비의 매몰비용 발생의 이유를 들어 시급성과 필요성을 이유로 예비비 182억원을 지출하였음<sup>27)</sup>.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27)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은 예비비 182억원을 지출하였으나, 추가공사비 7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고<sup>28)</sup>,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 서울시가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 사용의 내재적 제약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한 예비비 지출 자체에 대해서는 무효로 할 수는 없으나 예비비 지출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다. 종합의견

- 201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의 낮은 징수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징수 가능성이 없는 금액을 결손처리한 것은 지난해 결산시 지적한 사항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세빛둥둥섬에 대한 지체상금 세입누락은 협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96.3%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사용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도에 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사용의 내재적 제약을 위반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28)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집행이 가능함

# 물 관리 정책 관 산 하 물 관리 정책 과 소 관

## 가. 일반회계

### 1. 세 입

- 2011회계연도 물관리정책관 산하 물관리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며, 징수결정액 43억 79백만원 중 43억 71백만원이 수납되고 8백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전년(96.6%) 대비 3.2% 증가한 99.8%였음.
-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377%인 40억 61백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마포구 상암DMC 구역 내 실개천 조성 사업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경전철사업 장소와 중복되는 관계로 취소되어 28억 95백만원이 반납되었고(시도비 반환수입금), 미군기지(녹사평역, 캠프킴29) 유류오염 정화비용 청구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11억 55백만이 환수된 것에 기인하며, 유류오염 정화비용의 경우는 소송 확정 판결까지의 소요기간(항소 및 상고기간 등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에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임.

<표 1> 년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
						결 처 손 분	다 음년도 이 월 액	
2011	318	318	<b>4,379</b>	4,371	8	0	0	<b>99.8</b>
2010	413	413	438	423	15	0	15	<b>96.6</b>

29) '11.8.31 국가상대 정화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11.12.2일 '08~'10년 정화비용 환수하게 됨

## 2. 세 출

### □ 총 괄

- 당초 예산액 63억 7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3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6억 7백만원으로, 이중 87.8%인 58억원을 지출하고 7.4%인 4억 92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3억 15백만원이었음.
- 예산현액은 전년(298억 58백만원) 대비 232억 51백만원(77.9%) 감소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80억 3,200만원), 남산 물관리 사업(43억 6,500만원) 등의 주요 사업 종료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또한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총 일반회계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 2건을 포함하여 13건에 불과함.

<표 2> 년도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 비 비	변 경 전 용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2011	6,374	233	0	0	0	6,607	5,800	492	315 (4.8)
2010	17,729	12,129	0	117	0	29,858	24,177	233	5,448 (18.2)

### □ 예산이월

-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용산 물순환 환경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2건, 4억 92백만원으로 관련사업 예산현액(9억 63백만원)의 51.1%에 해당하며, 2건 모두 용역 준공기한이 경과되지 않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 사고이월 제도가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더라도 향후에는 용역발주 등의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게 사업계획(용역기간, 예산)을 수립하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3>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963	820	329	492
1	용산 물순환 환경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498	414	166	248
2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465	406	163	244

- 한편,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서울특별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대책 수립용역’ 등 2건, 2억 33백만원으로 불용액 없이 100% 지출하였음.

<표 4> 전년도 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233	233	0
1	서울특별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대책 수립용역	152	152	0
2	서울특별시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용역	81	81	0

□ 불용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3억 15백만원으로 전년(54억 48백만원) 대비 9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율 2.7%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 불용 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1.4%(2억 25백만원), 예산절감 28.6%(90백만원)로 나타나고 있음.

<표 5> 불용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불용 발생 사유		
			계	집행잔액	예산절감
6,607	315	4.7%	315(100%)	225(71.4%)	90(28.6%)

- 주요 사업 중 ‘세계 물의날 기념행사 추진’은 행사성 예산 축소계획에 의거 예산 축소 및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의 28.9%인 11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용산 물순환 환경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84백만원, ‘유류오염 정화용역’ 1억 8백만원 등 예산현액의 10% 이상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고 있는 바,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6> 불용율 1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 용	
				불용액	비율(%)
1	세계 물의날 기념행사 추진 <sup>30)</sup>	38	27	11	28.9
2	용산 물순환 환경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498	166	84	16.9
3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465	164	58	12.5
4	유류오염 정화용역	565	457	108	19.2
5	기본경비	55	43	12	21.8

## 나. 특별회계

### 1. 세 입

- 2011회계연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3억원과 국고보조금 108억 94백만을 포함한 141억 9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 대비 16억 92백만원 증가하였고 100% 징수하였음.
- 한편,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94.4%인 8억 47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12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1억 99백만원)은 증가하였으나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인 국고보조금이 10억 58백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30) 2012년도 예산액 : 29백만원



- 국고보조금 수입이 예산현액 보다 10억 58백만원 감소한 주요 사유는 물이용 부담금 징수금액에 따라 징수금액의 1.5%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나 물이용 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122억원 적게 징수됨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1억 83백만원 적게 교부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금액이 30억원이었으나 지방비 예산부족 등으로 지방비 대비 기금 지원분이 4억 25백만원 감액 조정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는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3억 98백만원 감액 조정<sup>31)</sup>됨에 따른 것으로,
- 향후 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비가 기획재정부 등의 심의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요구함으로써 기금 수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표 7> 년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
2011	14,760	281	15,041	14,194	14,194	0	100
2010	12,122	0	12,122	12,502	12,502	0	100

- 한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정부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수돗물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170원/m<sup>3</sup>)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한강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관련 자치단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로 보조하고 있으며,
- 서울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약 44.3%를 부담하고 있으나 상수원관리지역 중 서울시 면적이 0.3%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2.5%의 교부금은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수원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교부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5%인 징수 수수율의 인상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임.

31) 최종사업비 확정('10.12.29)

<표 8> 시도별 한강수계관리기금 분배 현황

(단위: 억원)

회계연도	계	사무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2011년	4,397	718	109	18	1,864	1,291	397
	(100%)	(16.3%)	(2.5%)	(0.4%)	(42.4%)	(29.4%)	(9.0%)
2010년	4,132	1,036	112	12	1,926	735	311
	(100%)	(25.1%)	(2.7%)	(0.3%)	(46.6%)	(17.8%)	(7.5%)

## 2. 세 출

### □ 총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0억 41만원으로 전년(121억 22백만원) 대비 29억 1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128억 57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 8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9> 년도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 경	전 용	이용/이체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1	14,760	281	0	0	5	0	15,041	12,857	308	1,876(12.5)
2010	12,122	0	0	0	18	0	12,122	10,880	281	961(7.9)

### □ 예산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력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용은 2건으로 연금부담금 부족예산과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인력운영비 및 인건비에서 5백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년도 전용액 18백만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음.

<표 10>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사유
	감 액	증 액		
합 계			5	
1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4	연금부담금 부족분 확보
2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금)	1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확보

□ 예산 이월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사고이월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32.5%인 3억 8백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동 사업은 용역수행 기간이 18개월('11.2 ~ '12.7)로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불가피한 사례에 해당함.

<표 11>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1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948	514	206	308

□ 불용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인 18억 76백만원으로 전년 (9억 61백만원, 7.9%) 대비 9억 1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별 불용 내역 중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7.8%였고 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이 45.3%를 차지 하고 있음.

<표 12> 불용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불 용 발 생 사 유				
			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계획변경	예산절감	기 타 (예비비)
15,041	1,876	12.5	1,876 (100%)	897 (47.8%)	849 (45.3%)	18 (1.0%)	112 (6.0%)

- 주요 불용 사업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각각 25.4%, 45.8%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지방비 부족에 따른 감액(4억 25백만원)과 기획재정부 심의에 따른 감액(3억 98백만원) 등에 의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 조정된 금액이 불용되었기 때문으로,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는 예산현액 대비 ’09년 불용율 43.4%, ’10년 22.7% 이어 ’11년에도 28.6%가 예산편성 외에 추가로 배정된 한강수계기금의 국외여비, 기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의 동일한 사유로 매년 반복적으로 높은 불용율을 보임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

<표 13> 불용율 1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	
				불용액	비율(%)
1	물관리 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42	30	12	28.6
2	환경기초시설 설치	3,000	2,239	761	25.4
3	잠실상수원 관리	553	420	133	24
4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948	집행:206 이월:308	434	45.8
5	예비비	112	0	112	10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 8. 심사결과

○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1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부결

○ 2011회계연도 물관리정책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참고자료 : 없음